

중국대학원 내규

2 0 1 6



<http://GSC.skku.edu>

成均館大學校 中國大學院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에서 대학(기관)에서 내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중국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소속 대학원 학생들에게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글로벌기본기 함양, 중국지역전문성 함양, 전문지식과 통합능력 함양을 통해 중국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2 장 용어 정의

제3조(학생구분) ① 본 대학원의 학생은 정원내 일반학생(이하 “일반학생”이라 한다), 정원외 외국국적의 학생(이하 “외국인 유학생”이라 한다)과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이하 “계약학과 학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학칙제63조의2에 따른 본 대학원 교류수학생은 해외협력대학으로 파견하는 학생(이하 “해외수학생”이라 한다)과 해외협력대학에서 본 대학원으로 파견온 학생(이하 “교환학생”이라 한다)이 있으며, 해외협력대학의 학위취득 대상학생(이하 “복수학위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4조(전공분야 구분) 본 대학원의 세부전공분야는 중국경영(Chinese studies in Management), 중국금융(Chinese studies in Finance), 중국창업전략(Chinese studies in Entrepreneurship & Strategy), 중국마케팅(Chinese studies in Marketing)으로 구분한다.

제 3 장 휴학 · 복학 · 유급 · 제적 · 징계 · 등록 · 장학

제5조(휴학 · 복학) ① 휴학 · 복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위해 교육과정에 따른 학기에 맞추어 휴학 · 복학을 해야 한다.

② 집중과정과 해외협력대학 파견과정 기간에는 중도휴학을 할 수 없으나, 개인의 사고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학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금은 잔여 수업일수에 따라 환불 처리한다.

제6조(유급) 학력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 내규 제20조에서 정한 파견을 위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급하게 하며, 유급한 학년은 수업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적) 학칙에 따라 통산 2회 학사경고자는 제적하며,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장이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 전에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본 대학원 학문적 윤리 규정을 위반한 학생
2. 중국대학원생 생활 수칙을 위배한 학생
3. 본교 학칙 제6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제9조(등록) ① 정규학기등록 및 집중과정등록으로 구분하며, 등록금액은 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② 해외협력대학 파견기간 해당 학기에도 본교로 등록금을 납부하며, 해외협력대학 교육비는 본교에서 별도로 지불한다.

③ 유급된 자의 등록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10조(등록예치금 책정 및 징수)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의사 확인을 위한 등록예치금을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예치금의 반환) 등록금 및 등록예치금의 반환은 성균관대학교 학칙(별표9-2)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12조(장학금 종류) ① 성적우수장학금: 입학성적 및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며 지급인원과 지급금액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연구장학금: 교원의 연구를 지원하거나 본인의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자 가운데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며, 우수학생 선발 및 지급금액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특별장학금: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며, 인정범위와 지급금액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장학금 산정) ① 장학금 총액: 장학금 총액은 각 입학 기수별 본 대학원에 납입한 등록금 총액에서 파견대학에 납입한 교육비를 제외한 잔여 총액의 30% 이내에서 장학금 총액을 산정한다.

② 장학금액: 학기별 장학금액과 수혜인원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장학생 선발) 장학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학업성적 성취도가 뛰어나고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장학금 지급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전학기 취득 학점이 6학점 미만인 경우
2. 학위과정 취득기간(일반학생 4개학기, 복수학위생 5개학기)을 초과한 경우
3. 계약학과 학생으로 산업체에서 교육비용을 100% 지원하는 경우
4. 재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학사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장학금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4 장 교육과정 운영

제16조(학기구분)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은 4개 학기로 운영하며, 여름·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학기당 이수학점) 본 대학원의 학기당 수강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하며, 집중과정에서는 정규학기 이수학점의 2/3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Taichi 과목은 학기당 수강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7조의2(교육프로그램) 본 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중국 비즈니스리더 프로그램(China

Business Leader Program, 약칭 China-BLP)이라 한다.

제17조의3(과정) 본 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주간과정(Daytime Course) 및 주말과정(Weekend Course)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교육과정 이수) ① 본 대학원의 수료학점은 36학점(논문연구 3학점 미포함)이며, 따로 지정한 Core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② 논문대체학점이수로 학위논문제출 면제가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이 내규 제36조 내지 제37조에 따른다.

③ 세부전공분야 및 협력대학별 Core과목의 선정에 대해서는 실제 개설교과목을 반영하여 학사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교육과정 이수학기) ① 본 대학원은 2년 4학기 과정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학생은 본교에서 3개 학기, 해외협력대학에서 1개 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유학생은 학생의 특성과 교육목적에 따라 해외협력대학 이수여부를 따로 정한다.

④ 복수학위생은 본교에서 3개 학기, 해외협력대학에서 1개 학기를 이수하되 복수학위 수여 요건에 따라 해외협력대학 수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학기는 수업연한에 포함한다.

⑤ 계약학과 학생은 본교에서 2개 학기, 협력대학에서 1개 학기 동안 수학하고, 각 학기 사이에 있는 여름·겨울방학 집중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총 3개 학기(2개의 집중과정을 포함 1년 6개월)에 조기 과정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⑥ 과정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로 등록하여 잔여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⑦ 주말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 해외협력대학의 주말과정 이수를 희망할 경우 학사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수업언어별 최소 취득학점) ①주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중국어수업을 2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②주말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중국어수업을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제20조(해외협력대학 파견 요건) 해외협력대학으로 파견될 학생은 한국과정에서 24학점 이상(평점평균 3.00 이상), 중국어 新HSK 5급 이상(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 중국어시험 성적 취득)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제21조(파견 해외협력대학의 선정) 파견 해외협력대학의 선정은 학생의 파견희망 대학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과 세부전공 분야에 따라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의2(분야 결정) 주간과정으로 입학 한 학생의 분야는 전공과목 이수상황, 중국협력대학 수학 상황을 고려하여 수료 전에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중국금융’, ‘중국창업·전략’, ‘중국마케팅’ 중에서, 주말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생의 분야는 입학과 동시 ‘중국경영’으로 결정한다.

제22조(해외교육과정의 거주) 본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숙사 입사가 어려운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원장이 기숙사 영외 거주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학점 인정의 범위) 국내외 타대학(해외협력대학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

34조 및 별표10의2에서 규정한 대학원별 이수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4조(이수구분처리 및 성적환산) ①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② 이수구분은 전공과정에서 이수한 경우에만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는 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국내외 타대학 취득 성적의 본교 성적인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논문제출자격시험

제25조(시험대상) ①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외국어과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유학생의 모국어가 영어 또는 중국어인 경우 원장이 해당 외국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과목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전공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로 한다.

제26조(외국어과목) 외국어과목은 영어와 중국어 2과목의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하며, 공인 외국어 성적의 합격점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호	구분	외국어 공인어학시험 및 점수	비 고
1	주간 과정	토익(TOEIC) 900점 이상 + 新중국어수평고시(HSK) 5급 이상	각 호의 영어와 중국어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하며, 해당성적과 상응하는 타 공인어학성적도 인정 가능
		토익(TOEIC) 800점 이상 + 新중국어수평고시(HSK) 6급 이상	
2	주말 과정	토익(TOEIC) 800점 이상 + 新중국어수평고시(HSK) 5급 이상	

③ 외국어과목의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 제출 기간은 1기부터 4기 학사 지정일까지로 한다.

제27조(전공과목) ① 전공과목 시험 교과목은 《중국경영 연구조사방법론》으로 한다.

② 전공과목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차기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제28조(출제 및 채점위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은 원장이 정한다.

제29조(시험진행 및 보고)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하고, 3년간 보관한다.

제 6 장 학위청구논문

제 1 절 학위청구논문지도

제30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로부터 계속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게 될 때에는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원장

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③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하기 위하여 논문지도 학생수를 지도교수 1인당 석사과정은 5명으로 제한한다. 단, 수료 학생은 제외한다.

제31조(논문지도신청) 본 대학원 학생은 논문제목을 기재한 논문연구계획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논문지도교수 선정 시기) ① 논문지도교수는 2기에 선정한다.

② 논문지도 교수의 선정 시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예비심사) ① 석사학위과정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예비심사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예비심사 대상자는 예비심사원 제출 시 논문작성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첨부하여 본 심사 2개 학기 전에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학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심사위원은 학과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교외전공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예비심사는 1회 실시하되, 공개심사는 생략한다.

⑤ 예비심사의 판정은 심사위원 2/3의 찬성을 합격으로 하며, 심사결과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제34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합격요건) ① 본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수료학점 중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B이상이어야 하며, 학위청구논문 제출학기까지 논문제출자격시험과 예비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 최종합격은 논문심사시행 학기말까지 수료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미취득시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35조(학위청구논문제출절차)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학위논문심사신청서” 및 “학위논문답변자격심사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은 영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어와 중국어(또는 영어)로 논문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석사학위는 3부를 학위청구논문 신청 1주일 전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학위논문제출의 면제) ① 전공과목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성적 B이상인 자는 수료학점 외에 전공과목 6학점을 추가 이수함(논문연구 3학점 제외)으로써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수료자는 논문대체 추가등록을 통해 전공과목 6학점을 추가 이수함으로써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③ 논문대체학점 이수자의 경우에도 외국어과목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37조(논문대체학점이수의 신청) 논문대체학점이수로 과정이수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논문제출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신청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3 절 학위청구논문심사

제38조(논문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심사(이하 “논문심사”라 한다)는 심사대상자의 공개발표, 질의와 답변, 심사위원들의 심사로 이루어진다.

② 심사위원은 학과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논문심사의 판정은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사 후 그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논문심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학위논문제작) ①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중국대학원 학위논문인쇄 및 제본요령”에 의거하여 논문을 제작하여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 부수 및 기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 장 위원회

제40조(학사관리위원회) ① 중국대학원 내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학사관리위원회는 원장, 학과장, 행정실장의 당연직 위원과 소속 교원 중 원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기능) 학사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 개정 및 수업개설에 관한 사항
3.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4. 지도교수 배정, 변경에 관한 사항
5. 학위논문 심사위원 배정, 변경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지급 기준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7. 학생 파견 해외협력대학 선정에 관한 사항
8. 내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 장 내규개정

제42조(개정) ① 원장은 학칙의 범위 안에서 본 대학원 학사관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내규를 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내규를 개정할 때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내규의 폐지) 이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중국대학원 학사내규」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본 대학원에 재적중인 자는 종전 내규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본대학원에 재적중인 자는 종전 내규에 따른다.